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74

제출년월 : 2026년 3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정비하고, 직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북구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안 제13조)

나.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별표 5)

-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10일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25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 기 간 : 2026. 1. 29. ~ 2026. 2. 18. (20일간)
- 방 법 : 성북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 결 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대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작성 제외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2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4 중 “(제14조 관련)”을 “(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17조제1항 관련)”을 “(제1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 제16조 (생 략)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7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 ---------- ---------- ---------- 제15조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9조 (생 략)	제19조·제20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정창섭